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356

발의연월일: 2021. 5. 25.

발 의 자:민형배·강병원·소병훈

신동근・양향자・이용선

이정문 · 임종성 · 주철현

홍익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·신체·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·제공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합니다.

얼마 전 승차 공유업체가 이용자의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급박한시민의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

이에,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. 범죄행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을 보호하기위한 것입니다(안 제15조, 제18조).

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5호 중 "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"를 "명백히"로 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"를 "명백히"로 한다.

다만,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	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	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	
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	
서 이용할 수 있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	5. <u>명백히</u>
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	
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	
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	
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	
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	
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	
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	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
·제공 제한) ① (생 략)	•제공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	②
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	
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	

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이용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경우 제1호·제2호의 경우로 한 정하고,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جاما ماد <u>خاما</u>
<u>다만, 제5호</u>
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
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.

1. ·	2.	(현행과	같음)
l. •	2.	(현행과	같음)

3.	명백히
-	
_	
_	
_	
_	
_	
_	

5. ~ 9. (생 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